

## 1. 개정이유

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일부 현지성이 높은 사무를 지자체에서도 수행토록 조정하는 『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』(법률 제20944호, 2025. 4. 22. 공포, 2026. 4. 23. 시행)에 따라 「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하는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한 안전에 관한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가. 수중레저 활동 안전점검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(안제5조 개정)

- 1)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점검의 결과 안전의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수중레저기구 등의 사용정지 및 원상복구 사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하던 것을 해양경찰서장이 하도록 함

나. 수중레저사업 등록 등의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(안 제10조 2항, 3항, 4항, 별지 제2호·3호 서식 개정)

- 1) 법 제15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의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,
- 2)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등록증 발급 사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하던 것을 해양경찰서장이 하도록 함

다. 수중레저사업의 휴업·폐업 등의 신고 사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

(안 제11조, 별지 제4호서식 개정)

1)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휴업·폐업·재개업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
라. 이용요금에 관한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(안 제12조, 별지 제5호서식 개정)

1) 수중레저사업자가 법 제19조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용요금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  
2) 입법예고 실시 예정  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예정

##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지방해양수산청장”을 “해양경찰서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지방해양수산청장”을 각각 “해양경찰서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 전단 중 “지방해양수산청장”을 “해양경찰서장”으로 한다.

제12조 전단 중 “지방해양수산청장”을 “해양경찰서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지방해양수산청장”을 “해양경찰서장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 중 “지방해양수산청”을 “해양경찰서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“지방해양수산청장”을 “해양경찰서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중 “지방해양수산청장”을 “해양경찰서장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지방해양수산청”을 “해양경찰서”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중 “지방해양수산청장”을 “해양경찰서장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지방해양수산청”을 “해양경찰서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

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
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  
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  
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 사항  
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 
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 
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실  
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
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  
출하여야 한다.

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 
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3  
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등록증  
을 발급하고, 그 내용을 등록대  
장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 제  
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 
에도 또한 같다.

제11조(휴업·폐업 등의 신고) 법  
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사  
업의 휴업·폐업 또는 재개업을  
신고하려는 수중레저사업자는  
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 
휴업·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서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해양경찰서장 -----  
-----.

④ 해양경찰서장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1조(휴업·폐업 등의 신고) 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이용요금) 수중레저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이용요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요금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신고한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---- 해양경찰서장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제12조(이용요금) 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 해양경찰서장-----  
-----  
-----

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

# [ ] 등록 수중레저사업 [ ] 변경등록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		14일

신청인	상호(명칭)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주소	

수중레저사업 종류 [ ]임대업 [ ]운송업 [ ]교육업

사업장의 위치

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 명세

사업기간

영업시간

「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·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[ ]등록 [ ]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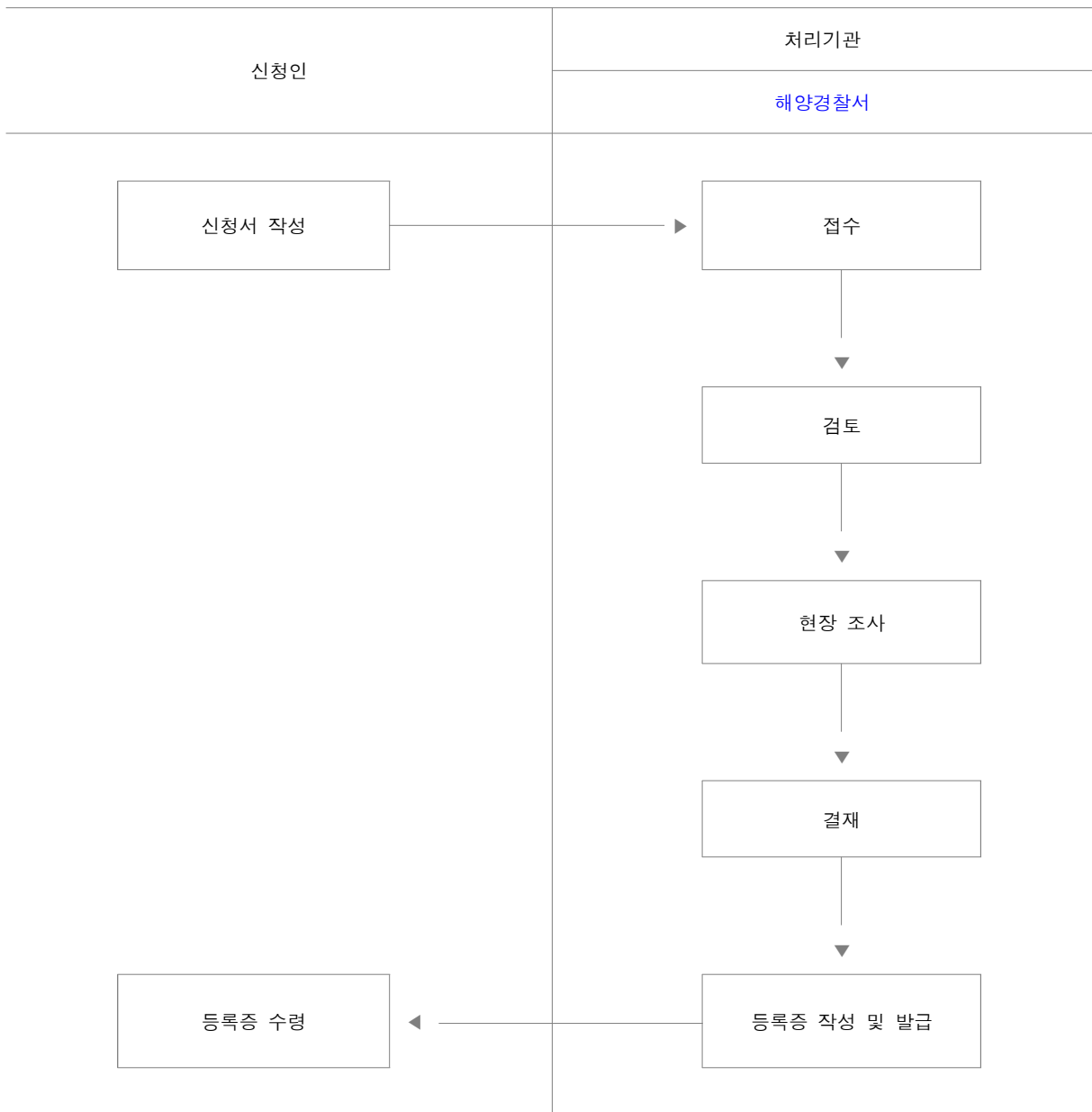
**해양경찰서장** 귀하

신청인 (대표자) 제출서류	<p>&lt;등록 신청 시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</li> <li>2. 종사자 수, 사업장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</li> <li>3. 수중레저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임대업: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 명세서, 수중레저장비 수리기술 자격증 또는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의 계약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</li> <li>나. 운송업: 운송선박 등 수중레저기구 명세서, 수중레저기구의 조종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</li> <li>다. 교육업: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</li> </ul> </li> </ol> <p>&lt;변경등록 신청 시&gt;</p> <p>해당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</p>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

(뒤쪽)

변경 및 처분 사항

등록번호 제 호

연월일	내용	확인



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서식]

# 이용요금 [ ] 신고서 [ ] 변경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즉시
신고인	상호(명칭)	성명(대표자)	
	주소 (전화: )		

사업장의 위치

수중레저사업 종류 [ ]임대업 [ ]운송업 [ ]교육업

수중레저기구/수중레저장비 명세

탑승 구간 또는 대여 시간	탑승 구간	대여 시간	시간
탑승료	대인	소인	기타
대여료		적용일	

변경 사유

「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수중레저 이용요금을 [ ]신고 [ ]변경신고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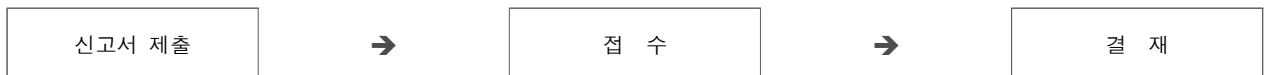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해양경찰서장 귀하

## 처리절차



신고인

처리기관: 해양경찰서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